

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알림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알림공문을 처분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, 배우자의 대리 수령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7. 2.

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



1.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알림 공시송달
2. 근 거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(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), 제28조(반환명령)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사유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최O필	75.6.20	경기도 오산시 현충로60번길 13 (이하 주소 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알림	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법률 제27조, 제28조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, 반환명령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민취업지원제도 2차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으로 기지급액(800,000원) 반환명령 ○ 처분일로부터 5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	배우자의 대리 우편 수령

4. 공고기간 : 2026.7.2.~2026.7.17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오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조미정(Tel. 031-8024-982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